

제 266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2.11.11.)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7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67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	71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	77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83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요구안 .....	91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	99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 가. 제안이유

-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행정대집행, 계약 등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활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특별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특별자문 신설(안 제3조의2)

- 가) 대상: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항 등
- 나) 방법: 고문변호사에게 수당 외에 별도 자문료 지급,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특별자문 가능

2) 공무원 소송비용 세부지원기준 등 규칙위임 사항 신설(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 등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별자문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비용에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 세부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u>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u>③</u>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p>	<p><u>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u></p> <p>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p> <p>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u>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p> <p><u>③</u>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납해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권해도]

####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정함(안 제2조~제6조)
- 2) 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 3) 고향사랑 기금의 목적, 기금운용관,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답례품 제공에 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6조에 알맞게 규정하였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탁서의 접수, 확인 등의 사무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 제7조에 명시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9조부터 제15조에 규정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거창군은 6만 인구 중 1만 3,4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내 어느 시·군보다 농업을 대표산업으로 하는 농업군으로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자격에 거창군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계 참여의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6. 수정안의 요지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2호 다목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의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함

##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의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라.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영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영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둬야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5. 고향사랑 기부금 계좌 우선 개설 및 예치·관리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 가. 제안이유

-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설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캠핑장 이용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 2 제3호다목)
  - 가) 사용료 기준인원 현실화하여 변경
    - (1) 캐빈하우스: 5명 ⇒ 4명
    - (2) 전기데크(5미터×5미터): 6명 ⇒ 4명
  - 나) 일반데크를 전기데크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데크 삭제

다)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5미터×5미터) 사용료 변경

(1) 캐빈하우스: 주중 80,000원 ⇒ 100,000원

(2) 방갈로: 주중 60,000원 ⇒ 80,000원

(3) 전기데크(5미터×5미터)

(가) (현행) 주중 25,000원, 주말·성수기 30,000원

(나) (변경) 주중·주말 30,000원, 성수기 40,000원

다) 신규 전기데크 및 다목적회의실 사용료 기준 신설

(1) 전기데크(6미터×8미터): 주중·주말 40,000원, 성수기 50,000원

(2) 다목적회의실: 시간당 20,000원

2) 사용료 감면 근거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3)

가)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2014년 조례 제정 후 사용료 인상이 없었으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복층, 기준인원 4명, 최대인원 6명	<u>100,000원</u>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	<u>80,000원</u>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전기데크 (14개소)	5미터×5미터, <u>4인용</u>	<u>30,000원</u>	30,000원	<u>40,000원</u>	1) 1시간 초과 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u>전기데크</u> (5개소)	<u>6미터×8미터,</u> <u>4인용</u>	<u>40,000원</u>	<u>40,000원</u>	<u>50,000원</u>	1) <u>1시간 초과</u> <u>마다 3,000원</u> 2) <u>추가 1명당</u> <u>3,000원</u>
<u>다목적</u> <u>회의실</u>	<u>20인용</u>	<u>시간당 20,000원</u>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아동일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명 요금 부과

다) 장비(텐트, 코펠 등을 말한다) 임대료는 별도



라) 사용 시간 <신 설>

(1)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다목적회의실: 9시부터 21시까지

마) 기간 구분

(1) 성수기: 7월~8월

(2)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제8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u></p>	<p>&lt;삭 제&gt;</p>
<p><u>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lt;삭 제&gt;</p>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 가. 제안이유

- 위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입법례에 맞게 목적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2조)
  - 1)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 다. 위원의 해촉 신설(안 제4조의2)
- 라.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용어순화 등 정비함(제2조·제3조, 제5조~제8조)

- 1) 인 ⇒ 명,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회무 ⇒ 업무
- 2) 군수의 자문기구인 위원회 회의록 작성주체 변경: 위원회 ⇒ 군수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위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에서 군수로 변경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문”을 “회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군수”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군수</u>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p> <p>③ 위원은 <u>당연직위원</u>과 <u>위촉위원</u>으로 구분하고, <u>당연직위원</u>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u>위촉위원</u>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u>제3조(기능)</u> 위원회는 <u>다음</u>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li> <li>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li> <li>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li> <li>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li> <li>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6. <u>기타</u> 위원장이 <u>자문</u>에 부치는 사항</li> </ol>	<p><u>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u>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u>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한다.</p> <p>③ <u>당연직</u> 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u>위촉직</u>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u>제3조(기능)</u> 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u>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li> <li>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li> <li>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li> <li>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li> <li>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6. <u>그 밖에</u> 위원장이 <u>회의</u>에 부치는 사항</li> </ol>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  
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  
하는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 <신 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군수는 회의사항에 관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가) 인용조문 변경

- (1) 법 제10조 ⇒ 법 제10조2(안 제5조)

(2) 영 제7조의2 ⇒ 영 제10조의3(안 제6조)

나) 용어 변경

(1) 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조·제6조)

(2)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안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제17조·제19조·제28조·제30조)

(3) 실경작자 ⇒ 농업인(안 제24조)

2). 조례위임사항 반영(안 제5조제5항)

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10억, 처분 10억 이상인 재산

(2) 1건당 기준면적이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용어를 알맞게 변경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금액과 면적 기준을 명시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에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6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5조 조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5조의2 조 제목,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6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용·수익허가대장”을 “사용허가대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일시사용·수익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p> <p><b>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군수는 <u>법 제10조</u>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u>관리계획</u>”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u>공유재산의 관리계획</u>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u>관리계획</u>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u>관리계획</u>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p> <p><b>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b> ① 군수는 <u>법 제10조2</u>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u>공유재산관리계획</u>”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u>공유재산관리계획</u>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u>공유재산관리계획</u>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u>공유재산관리계획</u>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u>공유재산관리계획</u>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0억원</p>

현행	개정안
<p><b>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b></p> <p>① <u>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u>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p> <p>② 심의회는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u>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li> <li>2. <u>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u></li> <li>3. <u>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u></li> <li>4. <u>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u></li> <li>5.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③ (생략)</p> <p>④ <u>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li> <li>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⑤·⑥ (생략)</p> <p>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p>	<p><b>개정안</b></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p> <p><u>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u></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p> <p><b>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b></p> <p>① <u>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u>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u>둔다.</u></p> <p>② 심의회는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u>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 &lt;삭 제&gt;</li> <li>2. <u>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u></li> <li>3. <u>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u></li> <li>4.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li> <li>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開議)</u>하고, 출석위원 과</p>



현행	개정안
<p>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p> <p>⑧~⑩ (생략)</p> <p><b>제15조(사용·수익허가)</b>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u>사용·수익</u>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u>사용 또는 수익</u>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u>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 목적 및 기간</li> <li>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li> <li>3. <u>사용·수익</u>허가 재산의 보존의무</li> <li>4. <u>사용·수익</u>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li> <li>5. 허가조건</li> </ol> <p><b>제15조의2(수익계약으로 <u>사용·수익</u>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b></p> <p>①~③ (생략)</p> <p><b>제16조(사용·수익허가대장 비치)</b>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u>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u>사용·수익</u>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b>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b>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의 표시, <u>사용·수익</u>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li> </ol>	<p>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p> <p>⑧~⑩ (현행과 같음)</p> <p><b>제15조(사용허가)</b>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u>사용</u>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u>사용</u>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사용</u>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 목적 및 기간</li> <li>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li> <li>3. <u>사용</u>허가 재산의 보존의무</li> <li>4. <u>사용</u>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li> <li>5. 허가조건</li> </ol> <p><b>제15조의2(수익계약으로 <u>사용</u>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b></p> <p>①~③ (현행과 같음)</p> <p><b>제16조(사용허가대장 비치)</b>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u>사용</u>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u>사용</u>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b>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b>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의 표시, <u>사용</u>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li> </ol>

현행	개정안
<p>2.~5.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⑥ (생략)</p> <p><b>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b>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u>일시사용·수익허가</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24조(대부료율)</b>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실경작자</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6. (생략)            ⑥·⑦ (생략)</p> <p><b>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b>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u>사용·수익</u>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생략)</p> <p><b>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p>	<p>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u>사용허가</u>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p> <p><b>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b>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u>일시사용익허가</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허가</u>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24조(대부료율)</b>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농업인</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p> <p><b>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b>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u>사용</u>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b>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p>

현행	개정안
<p>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② 삭제(2016.12.28.)</p> <p>③~⑦ (생략)</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허가</u>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2022. 8. 1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조항에 위임 법령 인용 조문 추가함(안 제1조)
- 2) 조례로 위임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가) 운영비 종목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

(1) 군수가 따로 정함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3) 법령명 약칭 표현 정비(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2022. 2. 3. 개정됨에 따라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개의회”를 “개의회(開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b>제8조의2(운영비 지원)</b> ① 「<u>국민체육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상근직원 인력운영비</u></li> <li>2. <u>사무소 운영 기본경비</u></li> <li>3. <u>사무시설 임차료</u></li> <li>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운영경비</u></li> </ol> <p>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p>
<p><b>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b> ①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p> <p>③·④ (생략)</p>	<p><b>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b> ① <u>법</u>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13조(운영)**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13조(운영)**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8조의2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175,825	179,341	182,927	186,585	190,316

### 3. 관련 의견

거창군체육회 운영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 왔으나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인건비: 139,985천원

1) 사무국장(6급 4호봉) 42,912천원

2) 사무차장(7급 5호봉) 41,578천원

3) 대 리(8급 7호봉) 39,897천원

4) 기타경비 15,598천원

나. 운영비: 35,840천원

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연 2퍼센트 상승 적용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군의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가)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제13조)

나)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세칙

다) 삭제

(1) 수당, 준용: 개별조례에서 달리 정할 사항이 없으면 「거

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하면 됨

(2)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 중복·재기재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조례에 정할 필요없음. 법제처 정비대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22. 12. 31.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나 체육분야 유일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 체육진흥·발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의안 제출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의안 제출 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상 오류를 범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후단을 삭제하고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조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 제2항) 중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 제5항)제1호 중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관계자 1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1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 제6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제7항) 중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10조·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기금의 조성)</b>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li> <li>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4.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u>」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li> <li>5. 그 밖에 수입금</li> </ol> <p>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p>	<p><b>제2조(기금의 조성)</b>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li> <li>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4.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li> <li>5. 그 밖에 수입금</li> </ol> <p>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p>
<p><b>제3조(기금의 존속기한)</b>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b>제3조(기금의 존속기한)</b>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7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lt;단서 삭제&gt;</p>
<p><b>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b>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lt;삭 제&gt;</p>
<p><b>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b>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p>	<p><b>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b> &lt;삭 제&gt;</p>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 <신 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삭 제>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②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② (생략)

<삭 제>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 제안이유

- 거창국민체육센터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경기준을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수시로 변경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안 제3조·제6조·제12조의2)
  - 가) 운영시간과 휴무일
  - 나)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 2) 볼링관련 제도 개선 및 신설

- 가) 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신설함(안 제12조의2)
- 나) 볼링장 월 사용 기준 현행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1)  
(현행) 1일 2시간 ⇒ (변경) 1회 4게임
- 다) 볼링화 대여료 신설함(안 별표 1)
- 3) 사용료 감경기준 현행에 맞게 조정(안 별표 2)
  - 가) 신설: 감경을 100분의 30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 나) 사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에 따라 차등 징수함에 따라 100분의 30 감경과 같은 효과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볼링회원 및 이용자의 증가로 볼링장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했으나 현재 지원 기준이 없어 인근 도시나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에 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이용자들은 수수료 내고 시설 내에서 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



- 많은 군민이 체력을 단련하여 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체육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시설의 개방)”을 “(시설의 개방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및 비고란과 별표 2 100분의 30 및 비고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100분의 50란 제3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3조(시설의 개방)</b> &lt;삭제 2021.2.17.&gt; <b>&lt;신 설&gt;</b></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li> <li>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li> <li>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li> </ol> <p>③~④ (생략)</p> <p><b>제6조(운영시간과 휴무일)</b> ① 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li> <li>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li> <li>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li> </ul> </li> <li>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li> </ol> <p>②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주 월요일</li> <li>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li> <li>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li> </ol>	<p><b>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b>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li> <li>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li> <li>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li> </ol> <p>③~④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2. 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수영 강습비	10,000원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회 4게임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1회 4게임 1일 2시간
볼링장 사물함	두칸	1개월	1,700			
	세칸		2,500			
<u>볼링화</u> <u>대여</u>	<u>1회</u>		<u>1,000</u>			<u>어린이</u> <u>무 료</u>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100분의 30. <u>다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u>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감경기준이 중복 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 가.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출연 개요

- 가)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나)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다) 사 업 비 : 2,915백만원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기본재산 증자 및 장학사업	2023년	2,915	2,915			2,915	

라) 사업내용

-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2) 부서의견

- 가)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걸맞은 장학사업 확대 운영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확대조성 필요(장학기금 100억 → 200억)
- 나)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인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거창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장학기금 200억 달성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써 매년 2,250백만원씩 4년간 군비 90억원을 출연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거창군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 교육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출연기관 현황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명		0명		0명		
임 원 (‘22. 9.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구○○	거창군수		재직기간(당연직)		
	상임이사	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창군협의회장		2년(21.12.26. ~ 23.12.25.)		
	이 사	이○○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직기간(당연직)		
	이 사	조○○	거창군산림조합장		2년(20.12.24. ~ 22.12.23.)		
	이 사	이○○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2년(21.12.26. ~ 23.12.25.)		
	이 사	이○○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		
	이 사	구○○	前 (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		
	이 사	이○○	한국예총 거창지회장		2년(20.12.24. ~ 22.12.23.)		
	이 사	최○○	거창군새마을회장		"		
	이 사	백○○	거창한뉴스 대표		"		
	이 사	정○○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년(21.12.26. ~ 23.12.25.)		
	이 사	염○○	(합)기산건설 대표		"		
	이 사	마○○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이 사	강○○	거창빼재오미자 대표		"		
	이 사	이○○	(사)거창시장번영회장		"		
	감 사	이○○	거창군학원연합회장		"		
	감 사	정○○	대경회계사무소		"		
주요기능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97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6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 12. 31.기준	자산	11,031 (자산 총액)
	예산액	1,464	1,562	1,683		부채	5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35	725	725		자본	10,97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45			1,031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나)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다)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2) 출연금 요구액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4,172천원

가) 2023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4,114천원	4,172천원	4,172천원	0	0	4,172천원	

※ 산출기초 : '21년 결산 보통세 34,770,183천원 × 1.2 / 10,000

3) 부서의견

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 지방세제·세정 발전 정책 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만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출연근거가 명확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출연기관 현황  
예산협조 공문

# 【 출연기관 현황 】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02-2071-2789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2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5명		69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2, 연구원17, 조사분석직6, 전문직3, 사무직18, 시설직1)	16명 (위촉연구원5,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원 (2022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오언석	서울도봉구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기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재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2.02.28. ~ 2023.02.27.			
	이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02.28. ~ 2023.02.27.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2022.02.28. ~ 2024.0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8,151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999 (자산 총액)
	예산액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972	10,821	11,160		자본	19,8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64			11,093		1,282	

# 참고 3

# 예산편성 협조 공문

인쇄 : 방종현 / 재무과 (2022-09-20 11:03:31)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33호(2022. 9. 16.)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 경 상 남 도



수신자 시군 세정부서

주무관	<b>정태우</b>	세정담당	<b>강병문</b>	세정과장	전결 2022. 9. 16.
협조자					<b>심상철</b>
시행	세정과-11781	(2022. 9. 16.)	접수	재무과-23507	(2022. 9. 16.)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암대로 300, 세정과 (사림동)	/ <a href="http://gyeongnam.go.kr">http://gyeongnam.go.kr</a>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a href="mailto:boy1466@korea.kr">boy1466@korea.kr</a>	/ 부분공개(5)

자연의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5. 4. - 6. 3.)

문서관리카드 재무과-23507 1/1

## 2023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

(단위 : 천원)

자치단체명	① '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23년 출연금			
		② 소계(③+④)	③ 현년도④	④ 과년도⑤	⑤ '22년 정산액	⑥ '23년 출연분 (⑥+1,2/10000)	⑦ '23년 출연금 (⑦=⑥+⑤)	
전국합계	110,273,769,295	103,195,082,268	102,950,282,105	244,800,162	0	12,383,405	12,383,405	
경남도	경남도 소계	6,043,118,622	5,536,153,501	5,518,670,090	17,483,411	0	664,337	664,337
	경남도 본청	3,484,185,282	3,007,882,817	3,026,092,874	-18,210,057	0	360,946	360,946
	창원시	821,117,731	790,458,736	780,527,418	9,931,318	0	94,855	94,855
	진주시	255,408,161	255,408,161	251,001,497	4,406,664	0	30,649	30,649
	통영시	67,270,838	67,270,838	65,526,636	1,744,202	0	8,072	8,072
	사천시	94,383,001	94,383,001	93,065,058	1,317,943	0	11,326	11,326
	김해시	390,255,939	390,255,939	383,317,970	6,937,969	0	46,831	46,831
	밀양시	98,827,346	98,827,346	97,706,776	1,120,570	0	11,859	11,859
	거제시	149,903,442	149,903,442	149,543,676	359,766	0	17,988	17,988
	양산시	318,280,798	318,277,137	313,145,016	5,132,121	0	38,193	38,193
	의령군	24,903,190	24,903,190	24,632,107	271,083	0	2,988	2,988
	함안군	73,309,664	73,309,664	72,258,431	1,051,233	0	8,797	8,797
	창녕군	48,249,116	48,249,116	47,672,790	576,326	0	5,790	5,790
	고성군	42,016,310	42,016,310	40,989,570	1,026,740	0	5,042	5,042
	남해군	24,343,295	24,343,295	24,196,691	146,604	0	2,921	2,921
	하동군	27,834,060	27,834,060	27,457,104	376,956	0	3,340	3,340
	산청군	29,361,988	29,361,988	29,033,777	328,211	0	3,523	3,523
	함양군	29,093,318	29,093,318	28,725,201	368,117	0	3,491	3,491
	거창군	34,770,183	34,770,183	34,171,515	598,668	0	4,172	4,172
	합천군	29,604,960	29,604,960	29,605,983	-1,023	0	3,552	3,552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출연 개요

- 가)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나)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다) 사 업 비 : 1,154,610,000원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3년	976,000,000	1,154,610,000	1,154,610,000	-	-	1,154,610,000	

라)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6명, 기간제 5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2) 부서의견

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7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나)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17. 1. 4. 문화재단을 설립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출연기관 현황 및 참고 사항

## 【 출연기관 현황 】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4.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2명	15명(과전7 포함)		
임원 (‘22.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18. 07. 01. ~	
	상임이사		공석		
	비상임이사	조○○	문화관광과장		‘21. 03. 08. ~
		하○○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21. 02. 18. ~ ‘23. 02. 17.
		안○○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1. 02. 18. ~ ‘23. 02. 17.
		이○○	한국예총거창지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하○○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신○○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21. 02. 18. ~ ‘23. 02. 17.
		이○○	사)한국서각협회 이사		‘21. 02. 18. ~ ‘23. 02. 17.
		권○○	거창미술협회사무국 지부장		‘21. 02. 18. ~ ‘23. 02. 17.
		김○○	주)거창중앙신문 대표		‘21. 02. 18. ~ ‘23. 02. 17.
		김○○	거창문화원 이사		‘21. 02. 18. ~ ‘23. 02. 17.
		김○○	前국제로타리3590지구 사무국장		‘21. 02. 18. ~ ‘23. 02. 17.
	유○○	거창예술강사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감사	정○○	대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1. 02. 18. ~ ‘23. 02. 17.	
	윤○○	재무과장		‘22. 07. 14. ~	
주요기능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5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976백만원('2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 12. 31.기준	자산	1,086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2,656	2,938	3,937		부채	825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2,342	2,624	3,620		자본 <sup>1)</sup>	261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97			2,069		93.9	

# 참 고 사 항

## 1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경상경비-출연금)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2023년 예산액	2022년 편성액	증감	증감사유
합계		1,154,610	976,000	178,610	
인건비	소 계	519,435	428,995	90,440	
	단장, 단원	328,185	294,068	34,117	근로기준법에 따른 반영
	기간제근로자	191,250	134,927	56,323	물가상승(최저임금) 반영
경상경비	소 계	635,175	547,005	88,170	
	복리후생비	51,880	44,800	7,080	
	일반운영비	177,120	208,330	△31,210	창의도시세, 당징비 등 감액
	공공요금및제세	157,632	139,332	18,300	전세요금, 공공요금 증액
	시설유지관리비	78,000	90,000	△12,000	홈페이지 중 시설물 검사 반영
	회의운영비	13,543	13,543		
	여비교통비	30,000	36,000	△6,000	국내여비 감액
	업무추진비	12,000	12,000		
	관서업무비	3,000	3,000		
	자산취득비	112,000		112,000	관공차, 공용장 장비 구매 증액

### ※ 거창문화재단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지원금액	906,300	691,000	843,000	976,000	1,154,610
전년대비증감	증) 362,170	감) 215,300	증) 152,000	증) 133,000	증) 178,610
예산과목	법정운영비	출연금(306-01)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가. 제안이유
  - 「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12.31.) 도래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사무	비고
거창군 가족센터	거창읍 강남로170	214.61 m <sup>2</sup>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 2) 민간위탁 내용

- 가) 위탁사무 : 거창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라)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운영 능력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 3) 그간 운영 상황

- 가) 수탁기관 : 거창기독교청년회(거창YMCA)
-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2. 12. 31.(3년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1항에 따라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임
- 센터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각종 상담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 「거창군가족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22년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지침

## II, 추진배경

- 거창군가족센터 수탁기간 만료 : 2022. 12. 31.

## III, 추진방향

- 위탁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공개 모집으로 투명성 확보
- 가족센터 포괄적 제공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능력 고려
- 선정기준의 합리적 수립과 절차의 객관성 강화로 최적의 위탁기관 선정
- 전문적인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수준 및 심사결과의 공신력 제고

## IV 가족센터 현황

### □ 위탁기관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거창군가족센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1층 (구 보건소)	214.61㎡	

### □ 현 위탁체 현황

수탁기관	대표	시설장	주소	비고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정병문	조미금	거창읍 강변로 87	

- ※ 최초 운영 : 2008. 1. 31. / 거창기독교청년회(거창YMCA) 위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2019년 예산 : 522,169천원
- 위탁사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

## V 세부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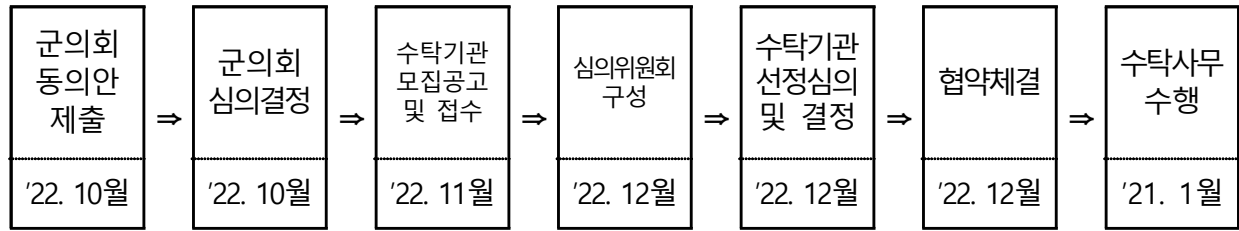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 :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각 호의 업무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시설 : 거창군 가족센터 시설물(강남로1길 170, 214.61㎡)

## □ 추진절차



##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1. 14.(월) ~ 2022. 11. 23.(목) / 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시
- 접수기간 : 2022. 11. 15.(화) ~ 2022. 11. 24.(금) / 10일간
- 접수장소 :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접수 불가)
-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① 거창군 가족센터 수탁신청서
- ②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 1부
  -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 단체 ] 단체등록증 및 회칙(규약)사본 각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 [ 학교 ] 등록증사본,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 인감증명서
- ③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 (별도서식)
- ④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 ⑤ 사업운영실적 (별도서식)
- ⑥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별도서식)
- ⑦ 서약서(별도서식)
- ⑧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동의서
- 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심사 및 선정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심사기간 : '22. 11. 28.(월) ~ '22. 12. 9.(금) / 12일간
- 심사방법 : 선정 심사 위원 구성·심사
  -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 ▶ 서 면 :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심사  
(면접심사 3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 사전 송부)
  - ▶ 면 접 : 신청기관 대표자 참석(센터장 참석가능), 운영계획 설명
- 심사항목

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6개항목)
1. 법인 적격성	10	- 유형 및 설립목적 - 적격성
2. 재정능력 및 공신력	20	-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3. 사업운영·실적능력	30	- 기관대표의 이사회의 적합성 - 운영실적, 전문성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4.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사업운영의 전문성, 재정책충방안의 타당성 - 지역사회 자원원방안
5. 센터장 전문성	10	-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 선정방법
  - ▶ 위원별 총점을 평균점으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자로 결정
  - ▶ 동점의 경우 심사기준의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기관
  - ▶ 단독 신청할 경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운영자로 결정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재공고 경우 : 신규 위탁체 선정시까지 현재 운영법인의 계약 연장

## □ 결정·통보 및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 2022. 12. 12. (월) ~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유지

## VI 행정사항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1. 14.(월) ~ 2022. 11. 24.(목)
-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2. 11. 28.(월)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2. 9.(금)한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022. 12. 24.(목)한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2022. 12. 30.(금)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 가. 제안이유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10.23.) 도래하여 당초 `22. 7. 26.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신규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 `22. 8. 11. ~ 10. 5.까지 총 3차 모집공고 실시에도 신규 수탁자 부재하고 기존수탁자 재협약 의사 표명(`22. 10. 11.)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 (3,007㎡)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59명/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2872개

### 2). 그간 운영 상황

가) 수탁기관 :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나) 위탁기간 : 2017. 10. 23. ~ 2022. 10. 22.(5년간)

### 3)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수탁자 신규 모집 공고	재위탁

### 4) 재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위탁기간 : 2022. 11. ~ 2026. 10. 22.(4년정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재  
위탁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음

다) 위탁방법 : 재위탁(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2022. 7. 2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2022. 8. 11.~10.5.까지 3차례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지원기관이 없어 기존수탁자인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 병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요양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추진 계획**

[붙임 1]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 재위탁 선정 평가를 통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I.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운영)제1항

## II. 일반 현황

### □ 위탁기관 현황

- 위탁기관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병상수	대지 면적	연면적
126병상(27실)	4,283m <sup>2</sup>	3,007m <sup>2</sup>

- 보유장비 및 기구 : 325종 2,872개

### □ 그 간 위·수탁 추진현황

구분	기 간	운영 기관
1차	2006. 10. 23. ~ 2007. 10. 22.(1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2차	2007. 10. 23. ~ 2017. 10. 22.(10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3차	2017. 10. 23. ~ 2022. 10. 22.(5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수탁자 신규 모집 공고	재위탁

※ 사유 : 수탁자 모집공고 '22. 8. 11. ~ 10. 5. 총 3차 실시 → 신규위탁자 부재

### III 추진일정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협의 : 2022년 10월
  - ※ 위·수탁계약서 제19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조치] : 계약만료 된 경우 병원직원 및 환자 등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동의안(변경)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업무개시 : 2022년 11월

### IV 세부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22. 11.~ 2026. 10. 22.[4년정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재위탁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음
- 위탁기관 :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방법 : 재위탁(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선정
    - 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 지역사회 기여도 등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수익금 : 병원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

### □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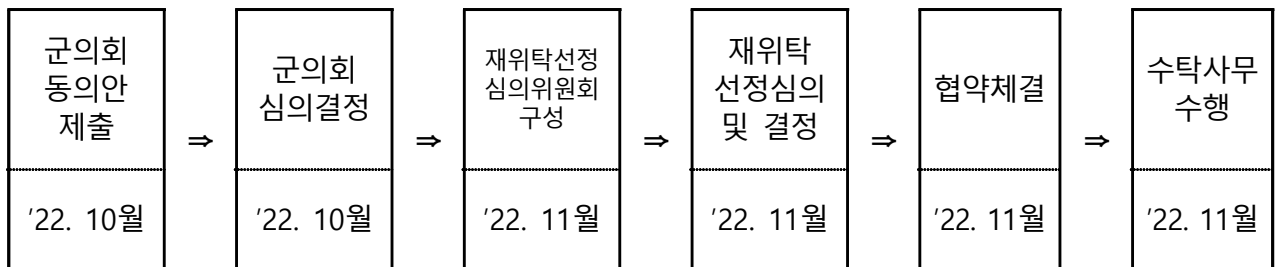
○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재위탁기간은 4년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부여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 □ 추진절차



###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구성시기 : 2022년 10월 중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하

• 당연직 : 부군수,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

• 위촉직 : 2~5명(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임 기 :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

- 주요기능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선정 심사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년 11월 중

- 장 소 : 부군수실

- 참석대상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
  - 심의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을 위한 심사
  - 제안설명 :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20분 이내 설명
  - 운영방식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
- 재위탁 여부 공개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2. 11월
    - 협약기간 : 2022. 11. ~ 2026. 10. 22.(4년정도)
    - 협약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V 행정사항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변경 동의안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재위탁 협약 체결 및 업무 개시 : 2022년 11월 중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11.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1. 1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 제안이유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거창군 엘리트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엘리트체육의 전문성을 갖춘 거창군체육회에 재협약하여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대상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 2) 위 치 : 거창군 관내
- 3) 수탁기관 : 거창군체육회
- 4) 사 업 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317,500	317,500	317,500	330,000

### 5) 사업내용

가) 대회참가비, 훈련비, 용품지원비, 코치 인건비 등

나) 대상종목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 역 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축 구 : 거창중앙고등학교
- 지 도 자 : 배드민턴, 역도, 사격, 그 외 1~2종목 배치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7) 재협약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민섭]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거창군의 경기단체를 육성하고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거창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임
-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창군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중인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 I 큰 거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협약체결 등)

## II 개 요

-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비고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317,500	317,500	317,500	330,000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재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간
- 수탁자 : 거창군체육회
- 위탁사무 : 대회 참가비, 훈련비, 용품비, 코치 인건비 등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 역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축구 : 거창중앙고등학교
  - 지도자 배치 : 배드민턴, 역도, 사격, 그 외 1~2종목(육상 등)
-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수 및 코치현황

○ 배드민턴부

구 분	선 수 (명)	창남초				거창중				승강기고			
		소계	4년 미만	5년	6년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20	25	12	7	1	4	5	3	0	2	8	2	3	3
2021	24	12	8	3	1	7	3	4	0	5	0	2	3
2022	25	13	9	2	2	7	1	2	4	5	1	3	1
창 단		창단 : 2001. 11. 코치 : 유성철(교육청) 감독 : 황대현(교사)				창단 : 2004. 4. 코치 : 정용진(교육청) 감독 : 서경달(교사)				창단 : 2011. 11. 코치 : 김주휘(거창군) 감독 : 박호식(교사)			

○ 역도부

구 분	선 수 (명)	대성중				대성일고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20	10	6	4	1	1	4	3	1	0
2021	14	8	3	4	1	6	2	3	1
2022	15	9	2	3	4	5	1	2	2
창 단		창단 : 2013.03.02 코치 : 이형섭(교육청) 감독 : 이귀태(교사)				창단 : 2017. 6월 교기지정 코치 : 이창준(거창군) 감독 : 김동후(교사)			

## □ 연도별 대회참가 결과

### ○ 배드민턴부

구 분	창남초		거창중		승강기교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2020	▶ 전국여름철대회	2회전탈락	▶ 전국봄철대회 ▶ 전국중고대회	3승3패 탈락 1회전탈락	▶ 전국봄철대회	3승1패 탈락
2021	▶ 전국봄철대회 ▶ 경남초중체육대회 ▶ 전국초등화장기대회	1승5패 탈락 단체전 금 단체전 동	▶ 전국중고대회 ▶ 전국봄철대회 ▶ 전국가을철대회 ▶ 경남초중체육대회	1회전 탈락 1승5패 탈락 2승4패 탈락 단체전 금	▶ 전국중고대회 ▶ 전국봄철대회 ▶ 경남도민체전	1회전탈락 1회전탈락 단체전 금
2022	▶ 전국소년체전 ▶ 경남초중학생체육대회 ▶ 전국학교대항전	동2개(남, 여) 금2개(남, 여) 16강 진출	▶ 전국종별대회 ▶ 높고장배 전국종별대회 ▶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64강, 32강 16강 32강 64강 32강	▶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 높고장배 전국종별대회	1회전탈락 1회전탈락

### ○ 역 도 부

구 분	대 성 중		대성일교	
	참가내역	참가결과	참가내역	참가결과
2020	▶ 코로나로 시합 미출전		▶ 춘계남자역도대회 ▶ 전국시도대항 역도대회 ▶ 전국남자역도대회 ▶ 전국주니어역도대회	금1개, 동2개 은3개 동2개 금3개, 동2개
2021	▶ 전국문곡서상천배대회 ▶ 전국소년체전 ▶ 경남초중체육대회	은2개, 동1개 4위 금3개, 은9개, 동3개	▶ 한국중고역도대회 ▶ 전국남자역도대회 ▶ 전국체전 ▶ 경남도민체전	금3개, 은2개, 동3개 은4개 금2개, 은1개 금12개, 은3개, 동3개
2022	▶ 제70회 전국춘계 남자역도 ▶ 전국소년체전	금3개, 은1개, 동6개 금3개	▶ 제70회 전국춘계남여역도대회 ▶ 제81회 문곡서상천배 ▶ 제94회 남자선수권대회 ▶ 제4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금3개, 은2개, 동3개 금4개, 은5개 은3개, 동3개 금1개, 은6개

□ 사업비 집행내역

○ 2020년

학교	집행내역(단위:원)							
	합계	인건비 및 피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남초	22,485,000			2,359,000	4,486,000	15,640,000		
거창중	21,480,350			1,645,350	5,640,000	14,195,000		
거창공고	28,579,530		6,000,000	1,347,530	4,881,000	16,072,000	279,000	
대성중	13,315,900				7,925,000	5,390,900		
대성일고	13,361,000			2,935,000	5,980,000	4,000,000	446,000	
체육회	181,343,990	181,286,990						57,000
계	280,565,770	181,286,990	6,000,000	8,286,880	28,912,000	55,297,900	725,000	57,000

○ 2021년

학교	집행내역(단위:원)							
	합계	인건비 및 피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남초	22,473,470			3,264,470	6,556,000	12,653,000		
거창중	21,469,050			6,243,050	6,751,000	8,475,000		
승강기고	27,454,940		5,700,000	3,097,600	4,768,340	13,492,000	367,000	
대성중	13,428,100			368,100	9,060,000	4,000,000		
대성일고	13,662,800			6,352,800	2,772,000	3,692,000	846,000	
체육회	181,981,860	181,607,860						374,000
계	280,440,220	181,607,860	5,700,000	19,326,020	29,907,340	42,312,000	1,213,000	374,000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회 및 훈련지원비 일부 미집행

□ 2022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17,5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복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6,000,000
							출장여비	1,0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3,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운영비	소계	123,0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9,000,000
							대회지원비	28,000,000
							기숙사비	6,000,000
계			317,500,000	계			317,500,000	

\* 인건비

- 급여 : 지도자 5명 × 37,500천원 / 피복비 - 지도자5명 × 200천원

• 지도자(코치) : 배드민턴 김주휘, 역도 이창준, 사격 정희택, 축구 최원민

\* 관리비 : 엘리트운동부 운영경비(체육회 여비, 업무추진비, 코치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 운영비 : 훈련용품비, 훈련지원비, 대회지원비, 기숙사비( 500천원 × 12개월)

○ 학교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학교명	용품비	훈련비	대회비	합 계	비고
창남초	10,500	7,000	5,000	22,500	배드민턴
거창중	10,000	6,500	5,000	21,500	
승강기고	11,500	7,000	5,500	24,000	
대성중	4,000	6,500	3,000	13,500	역도
대성일고	4,000	7,000	3,500	14,500	
중앙고	10,000	5,000	6,000	21,000	축구
합 계	50,000	39,000	28,000	117,000	

## IV 평가 및 재협약 추진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거창군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법령 및 조례상 어려움이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
    -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거창군체육회에서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운영능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음
    - 연도별 주요성과(2019~2021)
      - 2019 : 전국대회 수상 / 금 2, 은 9, 동 4
      - 2020 : 전국대회 수상 / 금 3, 은 3, 동 4
      - 2021 : 전국대회 수상 / 금 5, 은 9, 동 2
  
  - 지원하는 일부 종목의 대회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초·중·고 코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성적 향상 방안을 주문하였으나, 엘리트 체육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담보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지원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군민들의 선호 종목의 변화 등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함
  
  -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거창군체육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타당함
    - 거창군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
      - 직 원 : 12명(종사자 12)
      - 임 원 : 44명(회장 1, 부회장 6, 이사 35, 감사 2)
      - 회원단체 : 50개(종목 33, 읍면 17)
- ⇒ 민간위탁심의위원회(6명) 전원 거창군체육회 재협약 동의

□ 2023년

(단위: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30,0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복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6,500,000					
	출장여비	1,5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3,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운영비	소계	135,0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8,000,000					
	대회지원비	28,000,000					
	기숙사비	18,000,000					
계		330,000,000	계			330,000,000	

## V 향후계획

- 2022. 10. :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군의회 동의
- 2022. 12. : 재협약 체결 및 공증

붙임 협약서(안) 1부.



#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민 간 위 탁 협 약 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거창군수 “갑”과 수탁자인 거창군체육회장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민간위탁 목적)** 본 위탁금은 엘리트운동부의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 및 학교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금 교부액)** 위탁금 교부액은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으로 한다. 단,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위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3. 1. 1. ~ 2025. 12. 31.까지로 한다. 단, 위·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전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협약 및 재계약 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거창군 엘리트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6조(관련법·조례 및 규정 준수 의무) “을”은 수탁 기간 중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보고 등)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위탁자”가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위탁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업무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조사·검사 및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엘리트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지침 또는 훈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2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을” : 거창군체육회장